

춘천지방법원 2015. 2. 3 선고 2014가단539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1. 13.

판결 선고 2015. 2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강원 홍천군 C 대 36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8, 2, 11, 10, 9,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
조립식 판넬 구조물 3㎡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0,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
세멘트 불럭 조적조 슬레이트 건물 11㎡, 같은 도면 표시 8, 9,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불러 담장,
같은 도면 표시 10, 13을 연결한 선 세멘트 조적조 건물 벽선, 같은 도면 표시 13, 14를 연결한 선
불럭 담장을 각 철거하고,

나. 강원 홍천군 C 대 36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8, 2, 11, 10, 9,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
3㎡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0,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11㎡², 같은 도면 표시 12,
14, 13, 12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3㎡를 각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1. 4. 15. 강원 홍천군 C 대 365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1. 4. 1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의 부친 망 D은 1946. 5. 8.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E(분할 후 F)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을 재건축한 후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1985. 2. 10. 사망하였고, 피고가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을 상속하였다.

다.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일부로서 별지 도면 표시 8, 2, 11, 10, 9,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에 축조된 조립식 판넬 구조물 3m²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0,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에 축조된 세멘트 블럭 조적조 슬레이트 건물 11m², 같은 도면 표시 8, 9,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불럭 담장, 같은 도면 표시 10, 13을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세멘트 조적조 건물 벽선, 같은 도면 표시 13, 14를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불럭 담장이 각 설치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대한 지적공사 강원도본부 홍천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8, 2, 11, 10, 9,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조립식 판넬 구조물 3m²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0,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세멘트 블럭 조적조 슬레이트 건물 11m², 같은 도면 표시 8, 9, 10을 순차로

연결한 선 불력 담장, 같은 도면 표시 10, 13을 연결한 선 세멘트 조적조 건물 벽선, 같은 도면 표시 13, 14를 연결한 선 불력 담장을 각 철거하고, 별지 도면 표시 8, 2, 11, 10, 9,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3㎡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0,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11㎡, 같은 도면 표시 12, 14, 13, 12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3㎡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별지 도면 (가), (나), (다)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, 그 지상에 피고 소유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, 위 건물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,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부분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,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(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44285 판결 등 참조).

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정하경

별지